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 - 58호

「대전광역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8일

## 대전광역시의회의장

### 대전광역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조례안 예고

#### 1. 제안이유

지역사회혁신활동 확산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소통협력공간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나. 대전광역시장은 소통협력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대전광역시장은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5조).

라. 소통협력공간 및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소통협력공간운영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마. 대전광역시장은 소통협력공간 및 지역사회혁신활동, 지역사회문제 해결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부문,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정함(안 제11조).

##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참조 : 복지환경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127, FAX 042-270-5039, E-mail : ychm11@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제정 조례안 : 붙임

## 대전광역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혁신활동 확산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혁신활동”이란 주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혁신적인 방법과 절차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지역사회문제”란 대전광역시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 주민 삶의 질 개선, 지역사회 활성화, 지역공동체의 복원 등 주민상호간 또는 민·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회현안을 말한다.
3. “소통협력공간”이란 대전광역시 내 지역사회혁신활동을 확산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성·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능) 소통협력공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혁신활동 확산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의 업무 공간

2. 지역사회혁신활동의 확산 및 지역사회문제의 해결 등을 위한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과 상호 교류하는 네트워크 구축 공간
3. 지역사회혁신활동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 연구, 실험 공간
4. 지역사회혁신활동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체험·홍보·행사·전시 공간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혁신활동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사업, 활동 등을 위한 공간

제4조(사회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소통협력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센터나 기구 등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소통협력공간 관리 및 운영사무
2. 소통협력공간에 입주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의 선정 및 관리사무
3. 입주기관 지원 및 협력사무
4. 지역사회혁신활동 확산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네트워크 구축, 우수사례 연구 등 사무
5. 그 밖에 소통협력공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무

제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용·수익) 시장은 소통협력공간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일부를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소통협력공간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소통협력공간 및 센터 관리·운영
2.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관리·운영 계획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입주기관 선정,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혁신활동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혁신활동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 프로그램의 발굴, 교육, 홍보, 평가, 자문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통협력공간 및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공동체지원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사회혁신활동 및 지역사회문제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

이 위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공동체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9조(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

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  
되,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위원 3분의 1이상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민간부문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소통협력공간,  
지역사회혁신활동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부문,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  
결할 수 있다.

제12조(종합성과평가) ① 시장은 정기적으로 소통협력공간에서 진행된  
지역사회혁신활동사업, 지역사회문제 해결사업 및 센터의 수행사무  
등을 포함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는 필요한 경우 전문평가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 법령

###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비 용 추 계 서

### 1. 의안명

- 대전광역시 소통협공간 조성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조례안

### 2.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지역사회활동 활성화 및 센터 관리·운영비
- 제4조(사회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소통협력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사회혁신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소통협력공간 관리 및 운영사무
  2. 소통협력공간에 입주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의 선정 및 관리사무
  3. 입주기관 지원 및 협력사무
  4. 지역사회혁신활동 확산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네트워크 구축, 우수사례, 연구 등 사무
  5. 그 밖에 소통협력공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무

### 3.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대전광역시사회혁신센터 위·수탁에 따른 민간위탁사업비 지원

#### 나. 추계 결과 : 120억(3년간)

#### 다. 연도별 비용추계표(별첨)

#### 라. 재원조달방안 : 국고보조금(3년)+a / 지속적 시비 확보 필요

### 4. 그 밖에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없음

### 5. 작성자 : 공동체정책과 지방행정주사보 김현정

##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2,000,000	2,000,000	2,000,000			
국고보조금	2,000,000	2,000,000	2,000,000			
세 출	4,000,000	4,000,000	4,000,000			
- 인건비	480,000	480,000	480,000			
- 경상비	120,000	120,000	120,000			
- 프로그램운영비	1,400,000	1,400,000	1,400,000			
- 공간 리모델링	2,000,000	2,000,000	2,000,000			
<b>재원 조달</b>						
의존 재원	소 계	2,000,000	2,000,000	2,000,000		
	보조금	2,000,000	2,000,000	2,000,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000,000	2,000,000	2,000,000		
	지방세	2,000,000	2,000,000	2,00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